

영등포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용범의원 대표발의】



2013. 6. 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4호로 2013년 5월 24일 김용범 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3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조제1항)

- 나.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각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총 10개 부문으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 수상후보자에 대한 구민 추천인수를 10명에서 3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천조건을 강화함.
 -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일부 부문의 수여대상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확대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조건을 강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